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0077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6-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9



정보공개서

(주)찰스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로 125, 5층(성성동, 찰스리타워)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 1588-1742

E-mail : csl0711@nate.com

Homepage : www.charleshairtech@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ㅏ 이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찰스리	찰스리헤어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로 125, 5층(성성동, 찰스리타워)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9.26.	2012.09.27.	이동규	1588-1742	041-565-2929
	법인등록번호	161511-0145750	사업자등록번호	312-86-43828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동규/ (주)찰스리	찰스리헤어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로 125, 5층(성성동, 찰스리타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동규	1588-1742	041-565-2929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비고
명 칭	찰스리헤어테크		
상 호	찰스리헤어테크 OO점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015475740000 등록일자 : 2019.11.26.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04.01.~ 2022.03.31.	10,884,443	7,926,341	2,958,101	735,509	-224,359	492,349
2022.04.01.~ 2023.03.31.	11,751,309	7,653,942	4,097,367	726,492	-220,485	1,207,833
2023.04.01.~ 2024.03.31.	11,409,756	6,836,304	4,573,452	766,168	-247,783	477,517

※ 당사는 매 년 3월 말일을 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동규	대표이사	2012.09. ~ 현재	(주)찰스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8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CHARLESLEE HAIR TECH ·sensitivity beauty hair salon·	44류	등록일자 : 2019.11.26.	등록번호 : 4015475740000	이미정	2029.11.26.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본 가맹사업 관련 상표권 사용 허락을 얻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0년 7월 20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찰스리	찰스리헤어 테크	이동규	2020.07.~현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5로 125, 5층(성성동, 찰스리타워)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찰스리헤어테크	이미용	미용서비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5	25	0	26	26	0	27	27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	6		7	7		7	7	
강원									
충북	3	3		3	3		3	3	
충남	16	16		16	16		17	17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24	1				25
2022년	25	1				26
2023년	26	1				27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가 [찰스리헤어테크] 외에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대상 가맹점수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평균	면적3.3㎡ 당	상한	면적3.3㎡ 당	하한	면적3.3㎡ 당	
전체	27	503,685	8,690	1,102,920	28,047	7,954	265	2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	530,468	10,519	1,102,920	28,047	7,954	265	7
강원								
충북	3	해당없음						3
충남	17	486,601	8,256	879,874	14,939	149,126	2,837	16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상기 매출액은 당사 가맹점의 2023년 POS 매출액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2023년에 지역별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의 매출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7	1,15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	-	6,207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해당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와 계약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사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사이버종합대리점	담당자 : 유우석 연락처 : 02-735-3385 010-5579-3385 팩 스 : 070-7827-3785
보험계약자	(주)찰스리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최초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보증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198㎡기준 (60평)	3.3㎡당 금액			
설비/미용집기	협력업체 외 2	38,800	-	계약체결과 동시	발주 또는 시공 전 계약취소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간판/사인	가맹본부	17,600	-			
인테리어	가맹본부	165,000	2,750			
POS	가맹본부	2,500	-			
초도물품비 (시술약품 등)	가맹본부	15,000	-			
총계		238,900	3,981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경영주의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승압 및 간선, 화장실, 냉/난방, 도시가스, 소방,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테라스 및 외부 파사드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위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 3.3㎡ 당 22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미용사자격증 보유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5.5%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반환없음		
업무대행비	협력업체	대행수수료 수익의 30%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반환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훈련실비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III.1. 교육훈련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4]%	지급기일 익일부터	반환없음		

※대행수수료 수익이란 가맹본부가 점포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상품 등의 제휴, 협력 업체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등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타수익을 말하며, 귀하는 대행수수료 수익의 30%를 제휴 관련 업무대행 및 운영, 정산 등에 대한 대가인 업무대행 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3년에 가맹점에 공급한 품목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및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일반형 제39조 · 공동투자형 제41조	계약서
①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경영주”는 즉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사용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경영주”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③ 가맹본부가 전 1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영주”에게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경영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전 1항의 행위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직접 이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문서에 의한 “경영주”의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경영주” 또는 “경영주”가 선임한 자를 통하여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④ 본 미용실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주”는 본 미용실 자산(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 수익가치는 제외)을 본 계약이 종료, 해지 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여, 처분가액을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⑤ 가맹본부가 본 미용실의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주”는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산별 평가방법을 통해 본 미용실 자산(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 수익가치는 제외)의 평가가액을 확정된 후, 가맹본부가 “경영주”에게 본 계약 제6조 투자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경영주”는 정산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본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나. 유형고정자산(미용기구 등): 장부에 기록된 취득 당시 가액에서 5년 정액법으로 균등상각 후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상각을 원칙으로 함 다. 부동산: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함 라. 현금 및 예금: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의 현금 시제액 및 거래 통장상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 마. 기타 미용재료 등 소모품: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에서의 각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⑥ “경영주”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1일당 × 300,000원)을 가맹본부에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⑦ 가맹본부와 “경영주” 간 본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약 해지, 종료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하며, 영업용 물건 등의 관리,	제41조

회복 과정이나 이 계약에 바탕한 상호간 원상회복 등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는 최종정산합의서에 반영하기로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전항에 따라 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최종 정산 합의서를 "경영주"에게 교부하며, "경영주"는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을 위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경영주"의 협력 불이행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최종정산합의서 작성이 70일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자료만으로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 ⑨ 가맹본부가 교부한 최종정산합의서에 대하여 "경영주"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유효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기관이 경과한 날에 최종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정산액이 확정된다. ⑩ 전항에 따라 최종정산액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채무금 전액을 변제한다. ⑪ 가맹본부는 본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주"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가맹점 사업자가 출자한 투자금과 상계할 수 있다.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판매가격(원)	비고
앞머리컷	4,000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학생컷	16,000	
성인컷	20,000	
트렌드컷	30,000	
드라이	18,000~30,000	
일반펌	55,000~180,000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열펌	66,000~300,000	
일반컬러	44,000~110,000	
웰라컬러	55,000~150,000	
탈색	55,000~200,000	
모발클리닉	44,000~180,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원·부재료 및 1)의 판매제한 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은 상기 '1)'의 표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업	찰스리헤어테크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① 점포소재지 중앙으로부터 직선거리(네이버지도-거리재기 기준) 500m 를 원칙으로 함 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일반형 제37조 · 공동투자형 제39조	
③가맹본부는 "경영주"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경영주"가 계약상의 월회비 등 각종 비용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경영주"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경영주"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 미용실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라. 가맹본부가 "경영주"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영주"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일반형 제38조 제1항 · 공동투자형 제40조 제1항	
1."경영주"가 본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경영주"가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경영주"가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4."경영주"가 제17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경영주"가 제18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경영주"가 제21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경영주"가 제22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8."경영주"가 제23조 점포직원 및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9."경영주"가 제24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경영주"가 제26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경영주"가 제29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경영주"가 제31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3."경영주"가 제32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4."경영주"가 제33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경영주"가 제34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경영주"가 제37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일반형 제38조 제2항 · 공동투자형 제40조 제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경영주”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경영주”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경영주”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경영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영업정지명령
- 5.“경영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경영주”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경영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경영주”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경영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필요시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찰스리헤어테크]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미용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2:00	매 월 28일 이상(2월은 26일)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및 교육생 관리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가맹관리팀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가맹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 및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브랜드 광고	50%	50%	-
	가맹점 모집광고 + 브랜드 광고			
전국 및 지역단위 판촉				
가맹점 자체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일반형 제27조 · 공동투자형 제29조
⑤ "경영주"는 "경영주"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별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본 가맹사업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그 시행일 기준 15일 이전까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경영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일반형 제28조 · 공동투자형 제32조

- ① "경영주"는 본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 자료 들은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노하우로서 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영주"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전항의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공개, 계약종료 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영주"는 고객정보를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경영주" 또는 "경영주"의 직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⑤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5년간** 유지된다.
- ⑥ "경영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위약 벌 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공동투자형)

제32조(영업비밀 유지의무)

- ① "경영주"는 본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 자료 들은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노하우로서 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경영주"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전항의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공개, 계약종료 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영주"는 고객정보를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경영주" 또는 "경영주"의 직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⑤ 전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5년간** 유지된다.
- ⑥ "경영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위약벌 금 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에 영향 받지 않는다.

제33조(경업금지의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으로 경영에 참

여하는 경우 포함)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본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법인의 주주로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는 본 계약의 종료 후 1년간 본 계약 영업지역 내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을 위배시 **동일영업인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동종영업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제2항 위배시 **위약벌 금 이천만원**을, 제3항 위배시 **위약벌 천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34조(감독 및 시정요구)

- ① 가맹본부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경영주"의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경영주"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경영주"의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미용재료관리, 고객관리, 서비스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경영주"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고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경영주"는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신속히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⑤ 전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당 **금 일백만원(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제36조(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경영주"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이 제40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영주" 또는 "경영주"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주"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와 "경영주"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경영주"가 제21조, 제32조, 제37조,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영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손해액을 위약벌로써 가맹본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와 "경영주"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대금 등 채권의 상환은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정산 또는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 ⑦ "경영주"는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위반하고(귀책사유불문)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 폐점,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 ⑧ 아래 각 호의 경우 "경영주"는 **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 1. "경영주"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 2. "경영주"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3. "경영주"가 제2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4. "경영주"가 제25조를 위반하여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5. "경영주"가 제26조의 대금결제를 연2회 이상 연체한 경우

6. "경영주"가 제34조 제1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의 "가맹본부" 임직원의 정당한 점포출입을 막은 경우

7. "경영주"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⑨ 아래 각 호의 경우 "경영주"는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1. "경영주"가 제17조 제1항의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제4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점포환경개선 지시를 거부한 경우

2. "경영주"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3. "경영주"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경영주"가 제3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⑩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경영주"는 즉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사용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경영주"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1일당 × 300,000원)**을 가맹본부에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제42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다음 계산에 의한다.

[손해배상액 = 평균매출총이익 * 3개월 - 평균매출총이익 * 1% * 영업월수(월)]

② 가맹본부 또는 "경영주"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가맹점 개점 전인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가맹본부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경영주"에게 전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나. "경영주"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가 내·외부의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전항의 손해배상액을, 공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투입된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액 및 영업장비와 집기 비용을 상기 위약금에 추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

다. 상기 가. 나.목과 별도로, 가맹본부가 개점을 위하여 제작 중이었거나 제작을 완료한 외부 간판에 대한 제작 비용은 "경영주"가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가맹본부는 개점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찰스리 가맹점의 운영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영주"에게 문서로써 운영의사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경영주"의 운영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영주"의 귀책에 의한 계약해지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주"는 위약금으로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해지 의사표시' 또는 '확인 요청'이 인테리어 공사 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경영주"는 전항의 위약금 및 전 조의 손해배상 외에 별도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외에 "경영주"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임의로 가맹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36조(손해배상) 기재 외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테리어를 비롯한 설비 등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해지 시점	위약금
잔여계약기간 1년 이내	금 일오백만원
잔여계약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금 이천만원
잔여계약기간 2년 초과	금 이천오백만원

- ⑥ 최초 가맹계약으로부터 5년 내에 “경영주”의 사정으로 중도 해약하거나 “경영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경영주”는 본 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영업장비/집기 및 POS/간판 비용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감가상각 기간은 5년(1,825일)으로 한다.

[지급비용= 최초 투자 총액/1,825일 * [1,825일 *(1,825 - “경영주”의 본 사업장 운영일수)]

- ⑦ 본 조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은 본 계약 제36조 및 제41조 제6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실내외 공사착수	- 자체 공사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1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추가 관할권을 부여하고, 그 외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교육,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상품 및 신서비스 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3일	면제	-
개점 후 교육	교육필요시 실시	경우에 따라 실비부담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주"가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계약의 해지)
"경영주"가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계약의 갱신)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당사는 운영중인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